경영혁신규정

제 정 2021. 4.12 개 정 2022.11. 3 개 정 2023.11.21

[전략기획처 미래전략부 042-600-8246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경영혁신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략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11.3>

- 1. 경영혁신 :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업무를 다시 기획 및 실천하고 평가하는 행위로써, 사업구조변화, 신기술 적용, 조직구조 및 일하는 방식 개선,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하여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의도적 활동을 말한다.
- 2. 혁신목표 : 공사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한 매출확대, 원가절감,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기관 혁신목표를 의미한다.
- 3. 혁신과제 : 혁신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으로 "검토배경,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, 과제발굴, 목표설정, 개선방안,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, 기대성과"로 구성된다.
- 4. 혁신총괄부서 : 전사 경영혁신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5. 혁신리더: 경영혁신의 전사적인 확산과 부서별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선발된 직원으로서 혁신문화조성, 혁신과제 발굴, 혁신과제 실행 및 성과창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6. 혁신마일리지 : 경영혁신활동 촉진을 위하여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에 대하여 개인과 소속부서에 부여되는 마일리지를 말한다.
- 제4조(전사 경영혁신계획) ① 혁신총괄부서장은 중장기 경영전략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전사 경영혁신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3>
 - ② 전사 경영혁신계획에는 중점 혁신목표, 혁신과제 발굴계획, 혁신문화 확산계획, 혁신리더 운영, 혁신성과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혁신총괄부서장이 전사 경영혁신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(장)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 - ④ 전사 경영혁신계획은 수립 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서 매 1년마다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, 예기치 못한 급격한 경영환경, 정부정책 및 경영목표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총괄부서장이 수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3>

제5조(삭 제) <개정 2022.11.3>

제 2 장 혁신리더

제6조(운영목적) 경영혁신활동에 직원들을 참여시킴으로서, 전사적 혁신문화 조성, 현장 중심 혁신성과 창출, 문제

해결 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에 운영 목적이 있다.

- 제7조(구성) 혁신리더는 매년 '문제해결 활동, 가치공유 활동, 제도개선 활동' 역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3>
- 제8조(선발) 혁신리더는 직전년도 인사평정 우수자 중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혁신총괄본부장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3>
- 제9조(활동) 혁신리더는 혁신리더아카데미, 혁신CoP, 혁신회의 등의 경영혁신활동에 참여하여, 혁신문화 조성 및 혁신 성과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경력관리 및 보상) 혁신총괄부서는 혁신리더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경력 및 실적을 관리하여 인재육성 및 인사관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혁신마일리지제도를 통하여 혁신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혁신위원회

제11조(삭 제) <개정 2022.11.3>

- 제12조(경영혁신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,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혁신총괄본부장,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5인 이내로 선정하며, 간사는 혁신담당 부(팀)장으로 하되, 혁신성과 평가 시에는 2인 이내 외부위원을 위촉한다. <개정 2022.11.3>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11.3>
 - 1. 혁신아이디어 등급 선정(혁신과제 및 중점과제)
 - 2. 혁신활동 성과평가
 - 3.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방안
 - 4. 중점과제 취소
 - 5. 그 밖에 혁신총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11.21> 제12조의1(위원의 제착·회피·기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심의안건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경우
 - 2.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 -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 - ④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2.11.3>
- 제12조의2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4.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<개정 2022.11.3>
- 제13조(삭 제) <개정 2022.11.3>

- 제14조(외부위원) 제12조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선임한다. <개정 2022.11.3>
 - 1.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자
 - 2. 공인된 대학에서 경영학, 행정학 또는 경영혁신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
 - 3.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
 - 4.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차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
 - 5. 기타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경영관리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경영 혁신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 4 장 혁신과제 발굴, 실행, 평가

- 제15조(혁신과제 발굴) ① 혁신총괄부서장은 전사 혁신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3> ② 공모제안, 혁신워크숍, 혁신CoP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하여 발굴된 혁신아이디어는 [별표1]에 따라 심사배제, 단순제안, 혁신과제, 중점과제로 분류한다. <개정 2022.11.3>
 - 1. 심사배제 : 단순 건의, 1년 이내 중복 제안, 기시행 또는 추진 중인 제안, 단순 정보전달 또는 내용 불명확 제안
 - 2. 단순제안 : 사규 개정 등 복잡한 과정 없이 1개월 내에 개선 가능한 제안
 - 3. 혁신과제 : 사규 개정, TFT 운영 등 계획 수립을 통한 신중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안
 - 4. 중점과제 : 공사 중점 추진 예정인 혁신과제로 경영혁신위원회 또는 기관장이 선정
- 제16조(혁신과제 실행) ① 혁신총괄부서장은 발굴된 혁신과제에 대한 혁신과제 실행부서를 지정한다. <개정 2022.11.3> ② 혁신과제 실행부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[별표2]를 참조하여 수립하고, 실행 및 성과관리하여야 한다. 단, 과제실행에 대한 장애요인에 대하여 관련부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총괄부서장에게 별도로 지원요청할 수 있고, 혁신총괄부서장은 필요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3>
- 제17조(혁신과제 평가) ① 혁신총괄부서장는 혁신과제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 혁신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[별표3]에 따라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평가하고, 평가점수 및 과제등급을 확정한다.
 - ③ 혁신총괄부서장은 혁신성과 우수사례 전사적 확산을 통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영혁신경진대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고, 이 경우 혁신성과 창출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. <개정 2022.11.3>
- 제18조(자율혁신과제) ① 각 부서장은 자율적으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자체 실행계획에 따라 실행할 수 있으며(자율혁신과제), 제17조에 의한 혁신과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. <개정 2022.11.3>
 - ② 성과평가 시, 경영혁신위원회는 자율혁신과제의 등급(단순제안, 혁신과제, 중점과제)을 부여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1.3>
 - ③ 제2항의 혁신과제 평가에서 성과창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받은 경우, 제15조(혁신과제 발굴), 제16조(혁신과제 실행)에 대한 혁신마일리지를 소급하여 부여한다. <개정 2022.11.3>

제 5 장 혁신마일리지

- 제19조(목적) 직원의 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을 통한 전사적인 혁신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.
- 제20조(부여대상) 혁신마일리지는 혁신과제 발굴, 실행, 성과창출으로 구분하여, 직원개인과 소속부서에 각각 부여한다.

- 제21조(부여기준) 혁신마일리지 부여기준은 [별표4]와 같다.
- **제22조(개인보상)** 혁신마일리지에 의한 개인보상은 [별표4]에 따라 특별승진추천, 인사평정가점, 글로벌혁신연수, 역량향상 교육기회 등의 보상을 실시한다. <개정 2022.11.3>
- 제23조(부서보상) 혁신마일리지에 의한 부서보상은 부서평가(내부평가지표)에 반영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혁신활동 촉진

- 제24조(혁신문화 조성) 혁신총괄부서장은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직인사제도 개선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고,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3>
- 제25조(부서장 의무) ① 부서장은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혁신문화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혁신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며, 전사 및 본부별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부서장은 소속부서의 생산성 향상(기술력 향상, 원가절감 등)을 위하여 자체 혁신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부서장은 부서단위 혁신활동(문제해결 워크숍, 변화관리교육, 혁신CoP 등)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, 필요시 혁신총괄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3>
- 제26조(자원배분) 혁신총괄부서장은 전사 경영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원배분을 요청할수 있고 각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27조(공감대 형성) 혁신총괄부서장은 경영혁신계획과 추진현황을 각 부서와 적시에 공유하여 전사적인 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단,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11.3>
- 제28조(이해충돌방지) 혁신 전담부서를 비롯한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,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는 「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에 의한다. <개정 2022.11.3>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
- 1.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영혁신마일리지 운영기준은 폐기 한다.
- 2. 제6장 혁신마일리지 부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로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 5장 혁신마일리지 부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혁신 아이디어 등급 부여

□ 부여 절차

○ 각 부서 및 개인이 제출한 혁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절차 진행

구 분	예비 심사	1차 심사	2차 심사
기 능	▶ 심사배제 아이디어 선정	▶ 예비심사 통과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사	▶ 경영혁신위원회에 상정된 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심사
분 류 기 준	- 단순 건의, 1년 이내 중복제안, 기 추진사항, 단순정보 전달, 내용 불명확 등	- 기준점수 이상 : 혁신과제로 확정하고, 2차 심사 상정 - 기준점수 이하 : 단순제안으로 최종 확정	- 채택 시 : 경영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과제 선정 - 불채택 시 : 혁신과제로 최종 확정
주 체	혁신 총괄부서	혁신리더	경영혁신위원회 (외부이해관계자 포함)

※혁신 총괄부서 판단에 따라 절차 일부 조정(생략) 가능

□ 혁신 아이디어 등급

- (심사배제) 단순 건의사항 등의 사유로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
- (단순제안) 예비심사 통과 후, 1차 심사에서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단순제안으로 확정
- (혁신과제) 1차 심사 통과 후, 2차 심사에서 불채택 시 혁신과제로 확정
- (중점과제) 1차 심사 통과 후, 2차 심사에서 채택시 중점과제로 선정

□ 중점과제의 취소

- (취소요건) 과제추진 중 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, 과제추진의 실익이 없어 과제실행부서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- (취소절차) 과제 실행부서로부터 과제취소 사유서를 제출받아 경영혁신위원회에 부의하여 종료 결정

□ 혁신 아이디어 평가기준

아이디어명: 평가자:

		평 가 내 역	평 가 등 급						
구 분	배점	평가 세부 항목	A (매우 그렇다)	B (그렇다)	C (그저 그렇다)	D (상관 없다)	E (전혀 상관없다)		
과제		공사 경영목표·혁신목표	20점	15점	10점	5점	0점		
적합성	20	달성을 위한 적합성 평가							
		국민 삶의 질 개선 또는	20점	15점	10점	5점	0점		
효과성	20	국인 배의 글 개인 모든 생산성 향상 정도 평가							
	20		20점	15점	10점	5점	0점		
파급력		과제 수행에 따른 내부(조직)· 외부(국민) 파급 정도 평가							
			20점	15점	10점	5점	0점		
실현 가능성	20	공사 사업계획 반영 및 추진 가능성 평가							
				15점	10점	5점	0점		
창의성	20	아이디어 독창성 및 기존 방식과 차별성 평가							
\$L 7II	465	득 점							
합계	100	등 급	Ę	!순제안 /	혁신과제	/ 중점과	제		

혁신활동 성과평가표

과제명: 평가자:

		평 가 내 역	평 가 등 급					
구 분	배점	평가 세부 항목	A (매우 높다)	B (그렇다)	C (보통 이다)	D (별로 상관 없다)	E (매우 낮다)	
공공성	20	사회적 가치 실현 또는 정부정책 기여정도	20점	15점	10점	5점	0점	
성장성	30	사업확대, 원가절감, 효율성 제고 등	30점	25점	10점	5점	0점	
		공사 경쟁력 강화 기여정도						
수익성	20	재무적 성과에 기여정도	20점	15점	10점	5점	0점	
조직문화	직문화 10 구성원의 조직몰입(애사심)에		10점	8점	5점	2점	0점	
<u> </u>	10	기여정도						
11015	20	과제 추진과정에서	20점	15점	10점	5점	0점	
난이도	20	장애요인 극복 노력						
합계	100	득 점						
H /1	100	등 급	단순제안 / 혁신과제 / 중점과제					

경영혁신마일리지 운영기준

□ 마일리지 부여

○ 혁신리더 수행(개인)

역 무	수행 결과	마일	리지	마일리지	부여일	비고	
	불채택 또는 단순제안 채택	0점				■ 담당자 복수인 경우 - 기여도(참여)에 따른	
①-1	혁신과제 채택	단독수행	10점	수행결과		차등 배분	
문제해결 과정		조별수행	20점			- 브기피칭 사이크	
	중점과제 채택	단독수행	15점			■ 불가피한 사유로 리더 변경 시, 활동	
		조별수행	30점			기간에 따른 배분	
①-2 가치공유 활동	-	1점/건		혁신리더	선정일	■ 제도개선 활동은 동일	
①-3 제도개선 ^{주)} 활동	-	1점/건 (최대 3점)		활동결과 확정일		유형 반복 수행에 대해 1건으로 인정	

주) 공사 정책 결정 참여 : 혁신과제 평가, 직무등급 평가, 청년이사 경영제언 활동 등

○ 혁신활동 수행(개인)

& D	마일리지								마일리지	
역 무	단순제안		안	혁신과제			중점과제		부여일	비고
② 과제발굴	,	점/건	!	2젇	/건		3점/집	건	등급 확정일	
③ 과제실행	단독수 조별수			단독수행 조별수행		단독: 조별:	·····	4점/건 8점/건	실행계획 확정일	■ 담당자 복수인 경우 - 기여도(참여)에 따른 차등 배분
	평가 점수	70점 미만	70~74점 미만	74~78점 미만	78~82점 8 미만	82~86점 미만	86~90 ⁷ 미만	덕 90점 이상		· 성과평가 계획에
④ 성과창출	등급 결정	-	단순	는제안	혁신고	나 제	중점	심과제	평가결과 확정일	근거한 평가결과 반영
	마일 리지 	0점	5점	6점	7점	8점	9점	10점		

○ 혁신활동 수행(부서)

- 개인에게 마일리지 부여 시, 소속 부서에 동일 마일리지 부여 ※ 마일리지 부여일 기준 소속 부서로 귀속

□ 마일리지 활용

○ (개인 마일리지)

- 당해연도 부여된 마일리지는 누적 관리(연간 적립 20점 제한)

등 급	마일리지	혜 택	비고
플래티넘	20점 이상	 차년도 근평가점^{주1)}(1점) 역량향상 교육기회^{주2)}(70만원) 혁신연수 부여^{주3)} 	
골 드	15점 이상	■ 차년도 근평가점(0.5점) ■ 역량향상 교육기회(50만원)	■ 마일리지 누적 80점 이상일 경우 혁신성과를 고려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
실 버	10점 이상 15점 미만	■ 역량향상 교육기회(30만원)	

※ 마일리지 혜택은 경영여건, 혁신성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

주1) 인사평정지침에 위임

주2) 직무역량 관련 교육을 개인이 자율시행

주3) 혁신연수계획은 혁신담당부서에서 수립

○ (부서 마일리지)

- 당해연도 부여된 혁신 마일리지는 내부성과평가 반영 후 소멸